

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규정

제정 1986. 6. 17

개정 1992. 8. 10

개정 2014. 4. 0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2에 따라 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 04. 07)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호남지방 및 남해안 지역의 향토 문화를 조사·연구함으로써 지방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호남지방 남해안 지역 문화 유산의 발굴·조사·연구
2. 이 연구소와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 연구
3. 연구지 발간 및 연구발표회 개최
4. 기타 이 연구소와 관련 있는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소장·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의 사업을 주관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14. 04. 07)

④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(신설 2014. 04. 07)

⑤ 소장이 각 연구원을 위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(신설 2014. 04. 07)

⑥ 각 연구(보조)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 2에 따른다.(신설 2014. 04. 07)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4. 04. 07.)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(개정 2014. 04. 07.)

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신설 2014. 04. 07)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(신설 2014. 04. 07)

제5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지원금, 각종 위탁 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1986. 06. 17.)

이 규정은 198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2. 08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4. 0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